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처음부터끝까지우리아이보장보험 1901

나. 보험의 종류

구 분	보험의 세목	
주계약	1종	1형(순수보장형)
		2형(중도급부형)
		3형(80% 만기환급형)
	2종	순수보장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의 종류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종	30세만기	5년납, 10년납, 15년납, 24세납, 전기납	0세(태아포함) ~ 14세	월납
		20년납	0세(태아포함) ~ 10세	
2종	80세만기, 100세만기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4세납, 30세납	0세(태아포함) ~ 19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경우 아래의 특약을 의무부가 하여 판매한다.

- 무배당 주산기입원보장특약 : 가입금액 최저 1,000만원부터 2,000만원 한도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 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다자녀 가구 할인)

가.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본인포함 3명인 경우 :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0.5%를 할인한다.

나.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본인포함 4명 이상인 경우 :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한다.

다. ‘다자녀 가구 할인’을 받고자 할 때, 계약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주민등록표, 기타 계약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4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약관 제4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태아가입에 관한 사항

- 가. 이 보험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관에서 정한 태아가입특칙에 따라 운용한다. 다만, 태아의 가입은 임신사실 확인 후부터 임신 23주 이내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다.
- 나. 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경우 보험료는 「남자 0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출생한 피보험자의 성별이 여자일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 다. 회사는 피보험자인 태아가 출생할 때 계약일을 출생일로 변경하며, 변경된 계약일 전까지 납입된 보험료는 변경된 계약일 이후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 라. 피보험자의 출생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며,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

14. 기타

- 가. 이 보험의 경우 1구좌당 보험가입금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 나. 만기고객 종신보험 가입 특전 (1종에 한함)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후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 산출된 주계약의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 다. 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입원” 또는 “통원”을 보장함에 있어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한다.
- 라. 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보장함에 있어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1종 약관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2호 및 2종 약관 제2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에서 정한 “암수술급여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한다.

마.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바.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사.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 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